

원예농산물 시설·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(안)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산과입니다.

담당기관	담당과	사업명	담당자	전화번호
전북특별자치도	스마트농산과	원예농산물 시설·장비 지원사업	과장 정재관	280-2620
			사무관 유용열	280-2608
			주무관 한희섭	280-2647

I 사업개요

1. 목적

-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
- 예냉(豫冷)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
- 다양한 농산물의 현대화된 생산장비 확충으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목별 선진 기술 도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교섭력 및 가격경쟁력 제고

2. 근거법령

-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
-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(농업의 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)
-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

3.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및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
○ 산지저온 시설	3,013	2,712	3,316	3,316	3,316
- 균특이양 (25%)	904	814	829	829	829
- 시군비 (25%)	904	814	829	829	829
- 자부담 (50%)	1,205	1,084	1,658	1,658	1,658

1. 사업대상자

- 사업시행주체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
- 사업주관기관 : 시장·군수

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 계약재배, 매취, 수탁,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(전년 또는 전전년)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
 -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(배추, 무 등)를 사용한 농업법인(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)
-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는 사업 신청년도 자조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
 - ※ (참고 : 의무자조금 대상품목) 인삼, 친환경, 백합, 키위, 배, 파프리카, 사과, 감귤, 콩나물, 참외, 절화, 포도, 마늘, 양파, 뽕은감, 복숭아, 차, 자생란
- 사업의 중복·편중지원 방지를 위해 최근 5년간('21.~'25년) 동 사업에 참여하여 자금지원실적이 있는 업체는 동일분야 사업 대상에서 제외

3. 지원대상 및 품목

- 지원대상 :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김치가공업체
 - ※ 다만, 농업회사법인(김치가공업체 제외)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%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, 사후관리기간(저온시설 : 10년, 차량 : 5년)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
- 지원품목 : 긴급 수급안정 품목(양파, 마늘, 사과, 배), 수출 스타 육성 품목(포도, 딸기), 김치원료 품목(배추, 무), 그 외 원예작물(과수류, 채소류, 화훼류, 특작류 등)

4. 지원내용

-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유통효율 제고 및 상품화 지원 시설
 - 선별장(포장장)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
-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기능성 및 효능 유지에 필요한 저온처리 시설 및 차량
 - 산지저온시설 : 예냉설비·저온저장고·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
 - ※ 저온유통시설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,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
 - 저온수송차량 :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(일반 및 PCM 축냉식) 신규 구입 및 개조

5. 지원형태

- 균특이양 25%, 시군비 25%, 자부담 50%

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○ 보조사업자별 사업비 860백만원 한도내 신청가능(추가자담 제외)

* 도비 최대 215백만원한도내 지원

구 분		지원규모	사업비*(백만원)		기준단가	비 고	
			신규	개보수			
산지 저온 시설	예	차압식	66㎡까지	70	17.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 규 : 106만원/㎡ ▪ 개보수 : 신규의 30% 이하 ▪ 개보수 :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(예냉시설, 바닥, 내벽 등) *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* 기준단가는 건축, 전기 통신,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	
	냉	강제통풍식	66㎡까지	60	15.0		
	설	진공식 (수냉식, 공랭식)	1대	200	-		▪ 200백만원/대
및		저온저장고	99㎡~ 660㎡	130~ 860	60 ~4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 규 : 130만원/㎡ ▪ 개보수 : 신규의 50% 이하 	
저온 수송 차량		저온선별장	99㎡~ 660㎡	90~ 600	30~ 18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 규 : 90만원/㎡ ▪ 개보수 : 신규의 30% 이하 	
		저온냉장 수송차량 (PCM저온 수송차량)	1톤이상 ~ 5.5톤 이하	1대	110	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(화물자동차 + 윙바디, 축 설치) 가격에서 매칭 비율로 보조 ▪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▪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
유통 효율 제고 및 상품화 지원		선별장	99㎡~ 660㎡	75 ~ 495	22 ~ 14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 규 : 75만원/㎡ ▪ 개보수 : 신규의 30% 이하 	

※ 위 사업비는 균특이양, 시군비, 자부담을 합한 총사업비를 말함.

※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,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자부담으로 총당

※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(승강기, 이동성 있는 소모성 자재(파라트 등) 등)로는 지원 불가능

※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「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」에 의한 녹색인증,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치를 권장함

1. 사업신청단계

-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·군에 제출
 - ※ 부지확보 증빙 :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,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
 - 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심사기초자료,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
- 신청 대상자는 시·군에 제출하며, 시·군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한 후, 심의위원회 검토 후 우선순위 선정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
 - 시·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등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시군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

2. 사업자 선정단계

-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
 - 선정주체 : 시·군 심의위원회에서 <붙임1>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* 부여
→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
 - 유통시설 및 산지저온시설
: 계획 연계성, 지원 필요성, 기대효과, 시·군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

(1) 시·군

-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 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전북특별자치도에 추천(~11.14)
 - ※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(관련 증명서 첨부)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
 - ※ 시·군은 첨부된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저온시설 사업대상자 순위를 작성하여 신청서 제출(반드시 우선순위 결정하여 제출)
 - 2개소 제출시 우선순위 동점 제출할 경우, 2개소 모두 평가표상 2순위로 평가할 예정

(2) 전북특별자치도

- 전북특별자치도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시·군에 통지(11.21)

3.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

- 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,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
 - ※ (세부사업계획서 주요내용) ①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, 시공,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, ② 지원시설 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
- 시·군은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
 -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이 반납(이월 시 시군 승인 후 전북특별자치도에 보고)
-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
 -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사업포기 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
 - ※ '26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3년간('27~'29년까지) 사업자격 배제
- 사업계획·사업비 변경은 기본방침 및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승인
 - 단, 사업계획은 동일하나 공사단가 변경 등 자부담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변경은 시군에서 자체 검토·승인 후, 그 결과를 도에 공문으로 보고

4. 자금배정단계

전북특별자치도

- 전북특별자치도는 시·군으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 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
- 전북특별자치도는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,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

시·군

- 시·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보조금 교부 신청
-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
 -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(사업자금 집행의 원칙)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(금융기관 거래 자료 등)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

사업대상자

-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시군에 보조금 신청

5. 이행점검단계

-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(사업집행단계)
 - 점검시기 : 당해연도 5월, 10월[도, 시·군과 합동점검]
 - 점검내용: 사업계획 이행점검,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
- 점검결과 조치 :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

6. 사후관리단계

전북특별자치도

- 사후관리 합동점검(사업집행단계)
 - 점검시기 : 당해연도 5월, 10월 중 도와 시군 합동점검 추진 후 검토
 - 점검내용 : 사업계획 이행점검,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
- 점검결과 조치 :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

시·군

- 추진점검 :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전북자치도에 제출,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
-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·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·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0월말까지 전북자치도에 보고
-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,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도에 보고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시설 10년, 차량 5년
- 사업주관기관은 설치·공급된 시설물,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,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록·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
- 저장·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
-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,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

7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《사업운영평가》

-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·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
 - 시군은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(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) 평가 분석하여 보고
 - 평가방법
 - 평가주관기관 : 시군
 - 평가기간 : 다음년도 2 ~ 3월
 - 평가대상 : 전년도까지 선정·지원된 사업자
- ※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시군에 제출

《평가결과 환류》

-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